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12 월 2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12 월 22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59%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26%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4.1.1.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1]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연금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12 월 2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12 월 22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3→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0%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0.35%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중국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12 월 2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12 월 22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변경 전 1]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61%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후 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전 2]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

[변경 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 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2]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집합투자업자 대주주의 고유재산이 투자됩니다. 단,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합니다.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 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 년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환매하는 경우, 중도 환매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

[변경 후 2]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집합투자업자 대주주의 고유재산이 투자됩니다. 단,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합니다.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 억원(2020.12.16. 전액 회수)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 년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의무투자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금 회수 완료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 4 차산업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책임운용인력 추가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12 월 2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장호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장호, 심찬보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12 월 22 일

에 관한 사항		- 책임운용인력 추가(심찬보)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장호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장호, 심찬보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변경 전 1]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3.54%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후 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에 관한 사항	비용 (생략)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전 2]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

[변경 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 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2]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집합투자업자 대주주의 고유재산이 투자됩니다. 단,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합니다.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 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 년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환매하는 경우, 중도 환매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

[변경 후 2]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집합투자업자 대주주의 고유재산이 투자됩니다. 단,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합니다.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 억원(2020.12.16. 전액 회수)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 년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의무투자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금 회수 완료